

개정전	개정후	비고
<p>제 8 조(계약사항의 변경) '회원'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, 고객센터 등을 통해 '회사'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 변경사항을 '회사'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'회사'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</p>	<p>제 8 조(계약사항의 변경) '회원'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, 고객센터 등을 통해 '회사'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 변경사항을 '회사'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'회사'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</p> <p>① 사업자의 양도·양수, 합병 등으로 인해 기존 사업장(양도인)의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인(새로운 사업자)은 기존 '회원'의 계정(ID)을 임의로 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② 위 1 항의 경우, 양수인은 당사가 요구하는 정당한 법적 증빙 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, 양도양수 계약서, 폐업사실증명서 등)를 제출하여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새로운 성명(명칭)의 신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</p>	<p>신규조항 추가</p>
<p>제 23 조 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)</p> <p>① <생략> ② <생략></p>	<p>제 23 조 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)</p> <p>① <생략> ② <생략></p> <p>③ '회사'는 제 8 조의 2 에 따라 제 3 자(양수인)가 정당한 법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규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, 기존 '회원'(양도인)이 등록한 연락처(전화, 문자메시지 등)로 해당 사실과 탈퇴(이용계약 해지) 예정임을 사전에 통보한 후 직권으로 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존 '회원'의 연락처 변경, 연락 두절 등으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④ 제 3 항에 따라 직권 탈퇴 처리된 경우, 기존 계정에 보유 중이던 이용 내역 등은 탈퇴와 동시에 소멸하며, '회사'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	<p>신규조항 추가</p>
<p>[부칙] 본 약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약관내용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</p>	<p>[부칙] 본 약관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약관내용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</p>	<p>시행일 변경</p>